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58 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:최수진・구자근・임이자

김정재 • 김소희 • 김예지

조정훈・박준태・고동진

김선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전투표를 실시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"사전투표관리관"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는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도장을 일일이 날인하여 확인하도록 한 것으로, 사후에 불법적인 투표 용지 혼입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기도 함.

그런데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를 통해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였음.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도 사전투표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도 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.

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선관위측이 임의로 인쇄날인을 허용하여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해치고 있는 바 현행 법조항을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,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되 도 장의 날인은 인쇄날인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8조제3항 개 정). 법률 제 호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8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158조(사전투표) ①・② (생	제158조(사전투표참관) ①・②		
략)	(현행과 같음)		
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	③		
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			
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			
"사전투표관리관"칸에 자신의			
도장을 찍은 후 일런번호를 떼			
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			
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. <u><단</u>	<u>다만,</u>		
<u>서 신설></u>	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		
	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		
	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		
	<u>할 수 없다.</u>		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		